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추심 절차

납부해야 하는 세금 또는 수수료 납부 방법 미납 시 가능한 조치

개요.....1
 납부해야 할 금액 전액을 납부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CDTFA에 고지합니다.....1
 청구서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 CDTFA에 알립니다.....1
 CDTFA는 납세자의 권리를 존중합니다.....1
 참고 사항.....2
 결제 옵션.....2~4
 추심 및 집행 조치.....4~7
 유치권·압류·추가 보증금·틸렘 및 키퍼 영장·허가증 취소(정지)
 환급.....7-8
 추가 정보.....8

개요

결정 통지서 또는 즉시 결제 요구 통지서(청구서)를 받은 경우, 이는 표시된 날짜까지 납부해야 하는 세금 또는 수수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청구서를 수령했을 때 숙지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해야 할 금액의 결제 옵션
- 청구서의 금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 일정에 대한 합의를 체결하지 않는 경우, CDTFA에서 취할 수 있는 세금 및 수수료 추심 및 집행 조치

이 간행물은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조세·수수료관리국(CDTFA)은 세금 또는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귀하와 기꺼이 협력할 것입니다. 청구서와 관련한 질문이 있을 경우 즉시 CDTFA에 문의하십시오.

이 간행물에 포함된 대다수의 정보는 CDTFA의 판매세 및 사용세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CDTFA에서 관리하는 세금 및 수수료 프로그램 대부분에 유사한 조항이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금액 전액을 납부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CDTFA에 고지합니다.

납부해야 할 금액을 전액 납부하십시오. 전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CDTFA는 지금 가능한 최대 금액을 납부할 것을 권고합니다. 미납 세금 또는 수수료 잔액에 이자와 과태료가 발생하므로, 가능한 최대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납부해야 할 이자 및 관련 과태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CDTFA는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합니다(3페이지 참조).

미납 금액을 납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보유한 자산을 매각 또는 담보로 설정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 해당 금액을 납부할 방법을 모색하도록 CDTFA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액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분할 납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청구서를 발송한 CDTFA 사무소로 문의해야 합니다(3페이지 참조).

CDTFA는 미납액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은행 계좌, 봉급 또는 기타 소득을 압류하거나 자산 압류 및 매각 등의 추심 조치를 취할 법적 권한을 보유합니다(4~7페이지 참조).

청구서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 CDTFA에 알립니다

청구서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 CDTFA에 가능한 한 빨리 알려주십시오. 청구서의 전화번호로 연락하거나, 청구서를 발송한 CDTFA 사무소로 서면 문의를 하거나, 1-800-400-7115(CRS:711)번을 통해 고객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CDTFA 사무소를 방문하십시오.

여러 프로그램에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즉, 귀하는 특정 조치를 적시에 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일반적으로 결정 통지서의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결정 청원을 제출하여 이의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적시에 해당 청원을 제출하면 이의제기 권리가 보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17 *이의제기 절차: 판매세 및 사용세, 특별세 (Appeals Procedures: Sales and Use Taxes and Special Taxes)*를 참조하십시오.

CDTFA는 납세자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귀하는 납세자 권리장전 및 적법 절차에 따른 특정 권리를 보유합니다. 예를 들어, 귀하는 CDTFA 직원으로부터 전문성, 공정성, 예의를 바탕으로 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유합니다.

- 귀하의 케이스 담당 직원과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CDTFA 관리자와 논의할 권리.
- 계정 파일의 문서 사본을 요청할 권리.
- CDTFA에서 관리하는 다양한 세금 및 수수료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와 지원을 평이하게 작성된 문서로 받아볼 권리.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려면 간행물 70 *캘리포니아주 납세자의 권리 이해(Understanding Your Rights as a California Taxpayer) 사본을 요청하십시오.*

8페이지에 명시된 납세자 권리 보호 사무소(Taxpayers' Rights Advocate Office) 전화번호 및 주소도 참조하십시오.

참고 사항

CDTFA는 세금 및 수수료 정보를 다른 정부 기관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CDTFA에 제공하는 정보는 대부분 기밀로 취급되지만, 판매자 허가증과 같은 일부 정보는 공개될 수 있습니다. 특정 조건에 따라 과소 신고 및 미납 금액을 포함한 귀하의 계정 정보가 다른 정부 기관에 공유될 수 있습니다.

CDTFA는 귀하의 사업상 업무와 관련한 정보를 제3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CDTFA는 귀하의 사업상 업무와 관련한 정보를 보유한 모든 당사자로부터 정보를 취득할 권한이 있습니다. 판매자 허가증이 취소(중지)된 경우 공급업체에 해당 사항을 알리는 경우가 이에 포함됩니다.

귀하가 파산 절차에 연루된 경우 CDTFA에서 해당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사업체가 파산 신청을 한 경우 가까운 CDTFA 사무소에 연락하십시오. 절차상 귀하의 세금 또는 수수료 미납액이 제거되지 않을 수 있으나, 파산 사건이 계류 중인 동안 일정 기간에 한해 유치권 및 압류와 같은 추심 조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사업상 동업자가 아닌 경우 납부할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업자들은 동업 관계에서 납부할 금액에 대한 별도의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동업 기반의 사업체에서 동업 관계 변경 후 사업체에서 납부해야 할 금액으로부터 이전 동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파트너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경우, 전화 또는 서면으로 CDTFA에 즉시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동업 관계를 해지하는 경우 서면으로 또는 전화로 CDTFA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하가 동업 관계를 청산한 분기 및 이후 3분기 동안 납부해야 할 사업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무고한 배우자 또는 무고한 등록된 동거인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부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판매세 및 사용세법에 따라 무고한 배우자 또는 무고한 등록 동거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 수수료, 이자 및 과태료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려면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납부할 금액이 배우자 또는 등록된 동거인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 귀하의 납부할 금액에 대해 알지 못했고, 귀하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신중한 자가 납부할 금액에 대해 알고 있을 사유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CDTFA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귀하가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 및 기타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납부할 금액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귀하에게 불공정한 처우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무고한 배우자나 무고한 등록 동거인으로서 구제 요청이 거부된 경우, 귀하는 경제적 상황, 사업체 해산의 결과인지 여부, 귀하, 귀하의 배우자, 등록된 동거인에게 부과된 세금 또는 수수료에 대한 책임 등의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는 '형평적 구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CDTFA에서 판단을 위해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7 판매세 및 사용세의 무고한 배우자 구제\(Innocent Spouse Relief from Sales and Use Tax\)](#)를 참조하십시오.

귀하는 법인, 동업 또는 유한책임조합 또는 회사에서 미납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개인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책임이 있는 개인이 법인, 동업, 유한책임조합 및 유한책임회사가 미납한 세금, 과태료 및 이자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미납액에 대한 개인적 책임이 있음을 명시한 **제안된 결정 통지서**를 수령했으나, 그러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할 경우 **제안된 결정 통지서의 날짜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통지서를 발송한 CDTFA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이후 청구서(**결정 통지서**)를 받았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적시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청구서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 CDTFA에 알립니다** 섹션 참조). **참고:** 결정 통지서를 받기 전 이의제기를 접수하면 해당 이의제기는 시기적절하지 않으므로 거부됩니다.

결제 옵션

CDTFA는 신용카드 결제 및 전자 결제를 허용합니다. 또는 대행사를 통해 다른 결제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요건을 충족하거나 세액조정 제안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전자 결제

CDTFA 온라인 납부 절차를 통해 납부할 금액을 전자식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CDTFA는 귀하의 당좌예금 계좌 또는 저축 계좌에서 현재 납부할 금액 및 연체 금액을 전자식으로 인출합니다. CDTFA 웹사이트 (www.cdtfa.ca.gov)에 방문하여 **Make a Payment/Prepayment(결제/선납)**을 클릭하십시오. 이 옵션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 신용카드

납부할 금액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CDTFA는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및 Discover/Novus에서 발급된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합니다. 신용카드 결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CDTFA 웹사이트 (www.cdtfa.ca.gov)에 방문하여 *Make a Payment/Prepayment*(결제/선납)을 클릭하십시오. 1-855-292-8931로 전화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모든 신용카드 결제 건에는 거래 금액의 2.3%(최소 \$1.00)의 서비스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서비스 수수료는 신용카드 결제대행사에게 지급되며 CDTFA의 수익이 아닙니다.

■ 온라인 결제 옵션

온라인 자동 인출 프로세스를 통해 매주, 격주 또는 월별 분할 납부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결제액은 당좌예금 계좌 또는 저축 계좌에서 전자식으로 인출되어야 합니다. 언제나처럼 CDTFA는 추가 이자 및 과태료를 피하려면 전액을 납부할 것을 권고합니다. 전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할 금액의 세금 및 수수료에 대한 이자가 계속 발생하므로 CDTFA는 가능한 최대 금액을 납부할 것을 권고합니다. 사전 결정된 지침을 충족하는 계정의 경우 승인되는 즉시 응답이 제공됩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제안서의 경우 **CDTFA-403-E 개인 재무 보고서를 증빙 문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승인은 CDTFA의 재량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분할 납부 요청을 제출하려면 [웹사이트](http://www.cdtfa.ca.gov)에 방문하여 *Make a Payment/Prepayment*(결제/선납)을 클릭하십시오.

당좌예금 계좌 또는 저축 계좌가 없다면 지역 CDTFA 사무소 또는 추심 부서로 문의하십시오.

전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다른 조정안을 문의할 경우 CDTFA는 **4~7페이지**에 명시된 대로 추심 조치를 수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을 맞출 수 없는 경우 가능한 추심 조치를 피하려면, 계정에 배정된 추심 담당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분할 납부를 신청하기 전 숙지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분할 납부는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금액을 전액 납부하는 것보다 분할 납부 시 부담하는 비용이 더 큼니다. 또한, 해당 금액을 납부하기 위해 자금을 대출하는 것보다 더 큰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할 납부 방식으로 세금 또는 수수료를 납부하는 동안 CDTFA는 납부해야 할 세금 또는 수수료 금액 중 미납된 부분에 대한 이자를 계속 부과합니다. 은행 대출 이자율이나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수수료가 CDTFA에서 미납된 청구서에 부과하는 과태료 및 이자의 합산 금액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서(청구서)를 받았지만 만기일까지 납부해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일반적으로 10%의 '확정'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정 상황에서 10%의 '확정'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10%의 확정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통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분할 납부가 시작 및 승인되면 CDTFA에서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면제를 받으려면 분할 납부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어야 합니다.

CDTFA는 귀하의 자산에 대한 주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가 승인된 경우에도 CDTFA는 주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유치권 관련 내용은 **4페이지** 참조). 최초 납부 시 함께 제출한 재무 관련 서류를 근거로 유치권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특정 조건하에서 CDTFA는 분할 납부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CDTFA는 분할 납부 연체가 발생하거나, 납부 기한을 놓치거나, 모든 필수 세금 또는 수수료 신고서를 제출 및/또는 결제하지 않거나, 계약의 다른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분할 납부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CDTFA는 15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하거나 합당한 설명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발송합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분할 납부를 종료하는 경우 확정 과태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15일이 지나면 통보 없이 추가 추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4~7페이지** 참조).

신청 방법

판매세 또는 사용세 관련 분할 납부를 요청하려면 최대한 신속히 CDTFA에 연락해야 합니다. 청구서를 발송한 CDTFA 사무소로 문의하십시오.

기타 세금 또는 수수료 프로그램과 관련한 내용은 1-800-400-7115(CRS:711)번을 통해 고객 서비스 센터로 문의하십시오.

분할 납부가 승인된 후 재정 상황이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할 납부는 귀하의 재정 상황을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재정 상황의 변화가 있으며 분할 납부 조건을 변경해야 할 경우 분할 납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계정에 배정된 추심 담당자에게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 세액조정 제안

세액조정 제안(Offer in Compromise)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 및 수수료 납부자가 더 낮은 금액을 납부하여 납부할 금액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세금 및 수수료에 적용되며, 다음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납부해야 할 금액에 동의하고, 해당 금액은 최종 금액입니다
- CDTFA에서 귀하가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납부해야 할 금액의 전액을 지불할 소득, 수단, 자산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세액조정 제안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려면 www.cdtfa.ca.gov/oic/에서 온라인 세액조정 제안 사전 자격 판단 도구를 참조하십시오.

세액조정을 제안하려면 **CDTFA-490 세액조정 제안 신청서(Offer in Compromise Application)** 또는 **CDTFA-490-C 세액조정 제안 신청서-회사, LLC, 동업 사업체 등(Offer in Compromise Application for Corporations, LLC's, Partnerships, etc)**을 제출해야 합니다. CDTFA-490 및 CDTFA-490-C 양식은 CDTFA 웹사이트(www.cdtfa.ca.gov, **Forms & Publications(양식 및 간행물)** 클릭), CDTFA 사무소, 또는 고객 서비스 센터 전화(1-800-400-7115, CRS:711)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액조정 제안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가장 자주 제기되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은 CDTFA 웹사이트 및 **간행물 56 세액조정 제안(Offer In Compromis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심 및 집행 조치

아래에 설명된 바와 같이, 납부해야 할 금액을 적시에 납부하지 않거나 분할 납부 신청 또는 세액조정 제안 등 미납액 납부를 위한 기타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추심 및 집행 조치가 시행됩니다.

참고: 위험 결정서

위험 결정서를 받은 경우 이 간행물에 설명된 동일한 추심 및 집행 조치의 대상이지만, 접수 및 통보 기한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험 결정서는 즉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 또는 수수료에 대한 청구서로, 지연으로 인해 미납 금액을 징수하는 데 위험이 있을 경우 발행됩니다.

위험 결정서에 기반한 행정 심의회를 신청할 권리를 포함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간행물 17 이의제기 절차: 판매세 및 사용세, 특별세(Appeals Procedures: Sales and Use Taxes and Special Taxes)**를 참조하십시오.

CDTFA는 귀하의 자산에 대한 유치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미납 세금의 담보 또는 상환을 위해 사용되는 자산에 대한 법률상 청구권입니다.

CDTFA는 카운티 기록관을 통해 유치권을 신청하기 최소 30일 전에 예비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유치권 신청의 법적 권한 명시.
- 유치권이 기록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 표시.
- 유치권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되는 구제책 설명.

유치권의 역할

국세 유치권 통지가 기록되면 채권자는 유치권이 기록된 후 귀하가 취득한 자산을 포함하여 모든 부동산에 대한 청구권이 있음을 공개적으로 통지합니다.

유치권은 집이나 임대 부동산과 같은 모든 부동산에 부속됩니다.

CDTFA는 정책상 귀하의 주 거주지를 압류하여 매각하지 않으나, 집을 매각하거나 재융자를 신청할 경우 집에 대한 유치권을 집행할 것입니다.

유치권이 기록되면 신용 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집이나 차를 구매하기 위해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새로 신청하거나, 임대차 계약에 서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이 기록된 후에는, 다음 섹션의 설명에 따라 유치권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 유치권은 해제될 수 있지만 신용 기록에 7년간 남아 있습니다(유치권이 오류로 접수된 경우 제외).

유치권 해제

자산에 부과된 유치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 해제됩니다.

- 이자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 또는 수수료 전액 납부.
- 유치권이 접수된 후 청구액(세금 또는 수수료 결정액)이 0으로 조정됨.

CDTFA는 미납액을 상환하거나 청구액이 조정된 후 **국세 유치권 통지 면제서**를 발급합니다. 납부해야 할 금액을 전액을 납부하고 유치권을 즉시 해제해야 할 경우, 가까운 CDTFA 사무소에서 공인 결제 수단으로 납부한 후 유치권 해제가 필요하다고 알려야 합니다.

일부 상황에서 CDTFA는 유치권을 설정한 자산의 남은 부분이 납부해야 할 금액에 담보가 될 경우 부동산 일부에 부과된 유치권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치권이 오류로 접수된 것이 밝혀지면 유치권을 해제합니다.

유치권은 접수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미납 금액이 유치권에 포함되어 있고, 미납 상태인 경우 2회 갱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은 최대 30년간 유효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의 부분 해제

유치권의 부분 해제를 통해 부동산의 특정 부분에서 국세 유치권이 해제됩니다. 단, 유치권은 계속 효력을 발휘하며 귀하가 소유하거나 이후 취득한 기타 자산의 소유권 이전을 금합니다. 귀하가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또는 유치권을 보유한 당사자가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권리가 없는 경우 유치권의 부분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분 해제 요청은 CDTFA 계정에 배정된 CDTFA 사무소 또는 추심 담당 부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추심 담당 직원은 추심 지원국(Collections Support Bureau)에 승인 또는 거부 권고를 전달하기 요청과 증빙 서류를 검토합니다.

CDTFA가 유치권의 부분 해제를 고려하려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부분 해제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납세자 또는 에스스로 담당자의 서면 요청.
- **매도인과 매수인의 예상 결산 보고서** 또는 제안된 지출 일정.
- **CDTFA 유치권을 반영한 예비 소유권 보고서.**
- 감정 평가서 또는 해당 부동산의 시장 가치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인근 지역의 비교 가능한 부동산 보고서.
- 해당되는 경우 대출 기관의 숏세일 (short sale) 승인서.

CDTFA에서 요청을 처리하는 데 **30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제출한 문서는 제출 당시 최신 정보가 반영된 상태여야 하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CDTFA 세금 계정을 처리하는 CDTFA 사무소/부서 관련 정보는 1-800-400-7115 (CRS:711)번을 통해 고객 서비스 센터로 문의하십시오.

CDTFA 세금 유치권에 대한 에스스로 청구서

CDTFA 추심 지원국은 부동산에 설정된 국세 유치권에 대한 상환 청구서의 서면 요청을 처리합니다.

해당 요청은 팩스로 제출하거나 다음 주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Collections Support Bureau
PO Box 942879, MIC:55
Sacramento, CA 94279-0055
팩스: 1-916-327-0615

CDTFA에서 요청을 검토하고 응답하는데 영업일 기준 최소 2일이 소요됩니다.

사업체의 일괄 매각 시 청구서는 CDTFA 사무실에서 준비합니다.

CDTFA 세금 계정을 처리하는 CDTFA 사무소/부서 관련 정보는 1-800-400-7115 (CRS:711)번을 통해 고객 서비스 센터로 문의하십시오.

유치권 해제 사본 요청

귀하의 요청이 있을 경우 CDTFA는

유치권 해제 사본을 발송합니다. 예를 들어, 에스스로 대리인, 소유권 보험 회사 또는 귀하에게 직접 사본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CDTFA는 귀하의 이름으로 접수된 유치권 금액이 전액 납부되면 유치권 해제 사본을 발송합니다. 기록된 사본이 필요한 경우 CDTFA에 연락하여 해제 기록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즉시 제공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공 가능한 경우 카운티 또는 **주 총무처(Secretary of State)**를 통해 기록된 사본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지역 CDTFA 사무소 또는 추심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유치권 보류

일반적으로 CDTFA는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유치권 접수를 보류합니다.

- 적절한 분할 납부 계약 체결
- 분할 납부 계획에 따라 1년 이내에 미납 금액 상환
- 분할 납부 계획의 조건 준수
- CDTFA와 관련된 추심 문제가 발생한 이력이 없음

CDTFA는 귀하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미납 금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부채 청산을 위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귀하가 소유하거나 관련이 있는 모든 유형의 부동산 또는 개인 자산을 압류(점유)할 수 있습니다.

압류는 유치권과 다릅니다. 유치권은 미납 세금 또는 수수료에 대해 **담보로 사용되는 청구서**이나, 압류는 미납 세금 또는 수수료 청산을 위해 **자산을 점유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CDTFA는 **납부 요구서**를 발송한 후 세금이나 수수료 납부를 무시하거나 거절할 경우 압류를 진행합니다.

예시

- CDTFA는 귀하의 자산이지만 다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예: 급여, 배당금, 은행 계좌 잔액, 면허, 임대 소득, 미수금, 생명보험 해약 반환금 또는 수수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주류 판매 허가증을 소지한 경우 CDTFA에서 해당 면허를 점유하여 매각할 수 있습니다.
- CDTFA는 보유한 자산(예: 보트 또는 차량)을 점유하여 매각할 수 있습니다.

자산이 압류 또는 점유된 상태로 질문이 있을 경우, 압류 조치를 취한 CDTFA 직원에게 문의하십시오. CDTFA 관리자에게 사례 검토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자와 논의 후에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 권리 보호 사무소** (Taxpayers' Rights Advocate Office)와 논의를 통해 적절한 정책 및 절차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 압류

CDTFA가 은행 계좌를 압류할 경우, 일반적으로 압류는 은행이 압류를 접수한 시점에 예치된 자금(최대 추심액까지)만을 점유합니다.

은행은 점유한 귀하의 보유 자금을 10일간 보류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귀하는 고충 처리 심의회(hardship hearing)를 신청하거나, 해당 압류가 연방법 또는 주법에 따른 면제 대상임을 입증하거나, 적절한 기타 납부 조정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10일이 지나면 은행은 해당 금액에 추가 이자를 더한 금액을 CDTFA로 전송해야 합니다. CDTFA에서 점유한 자금을 예치한 경우 해당 자금의 반환을 위한 환급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례와 관련한 논의는 **압류 통지서**에 이름이 명시된 CDTFA 직원에게 전화로 문의하십시오.

CDTFA는 다음의 경우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 미납 금액을 공인 결제 수단(현금, 자기앞수표 또는 우편환)으로 납부합니다.
- CDTFA는 압류로 인해 귀하에게 상당한 경제적 고충이 발생한다고 판단합니다.

계정 압류가 실수로 인한 조치일 경우

CDTFA의 실수로 인해 기관에서 계좌를 압류하여 귀하가 은행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환급을 청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압류 시행 후 90일 이내에 CDTFA에 환급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압류 통지서를 발송한 CDTFA 사무소로 우편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급여 압류

CDTFA는 급여 압류, 즉 소득 원천징수 명령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일반적으로 급여 지급 시마다 세후 소득의 25%가 압류됩니다.

고충 처리 심의회를 요청하면 CDTFA 관리자 또는 사무소 담당자가 심의회를 제공합니다. CDTFA 담당자는 귀하에게 **CDTFA-403-E 개인 재무 보고서**를 작성하고 및 납부할 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증빙 서류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서로 기록된 고충 사항이 확인된 경우 원천징수 명령이 축소 또는 해제될 수 있습니다.

CDTFA에서 급여 압류 조치를 시행하면 해당 조치는 다음 시점에 만료됩니다.

- 압류 조치가 해제된 경우.
- 미납액을 납부한 경우.
- 미납액을 추심할 수 있는 법적 시한이 만료된 경우.

사례와 관련한 논의는 소득 원천징수 명령에 이름이 명시된 CDTFA 직원에게 전화로 문의하십시오.

자산에 대한 조치 해제

CDTFA가 보트 또는 차량과 같이 귀하가 보유한 자산을 점유한 경우 다음 상황에서 매각 날짜 전에 해당 자산에 대한 조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에 대한 CDTFA 이자를 납부한 경우.
- 에스크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적절한 채권을 제공한 경우.
- 세금 또는 수수료 납부를 위한 적절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자산 매각 비용이 미납 세금이나 수수료보다 큰 경우.

압류 자산 반환

다음과 같은 경우 CDTFA는 압류 자산의 반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CDTFA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 분할 납부 계약을 체결한 경우 (3페이지 참조).
- 자산 반환이 미납액을 납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경우.
- 자산 반환이 국가와 귀하에게 최선의 이익일 경우.
- 유효한 면제 청구서 또는 제3자 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법적으로 압류 면제 대상 자산의 목록은 **압류 통지서(Notice of Levy) 사본과 함께 제공된 CDTFA-425 판결 집행 면제(Exemptions from the Enforcement of Judgments) 양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류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 또는 압류 통지서 발송 후 15일 이내에 면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압류 조치로 인해 미납 세금이나 수수료에 대한 책임이 없는 타인의 자산이 압류될 경우, 당사자는 제3자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청구는 자산이 CDTFA로 이전되기 전에 제기해야 합니다.

CDTFA는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이며, 불량한 규정 준수 이력(예: 기한 내에 세금 신고서 금액 미납, 부도 수표로 납부 등)이 있는 경우 CDTFA는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금 전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보증금을 전송한 경우 CDTFA는 필요한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체에서 납부해야 하는 평균 세금의 6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송해야 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 허가증에 보증금 요구액은 최소 \$2,000, 최대 \$50,000입니다. 3년 연속으로 해당 계정의 납부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증금이 반환됩니다.

판매세 및 사용세 외의 프로그램의 보증금 요구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1-800-400-7115(CRS:711)번으로 전화하여 고객 서비스 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틸탭’ 또는 ‘키퍼’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이며, 납부해야 할 확정 판매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CDTFA는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나 지역 보안관이 사업장에 들어가 총 수익금 또는 금전등록기에 들어 있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민사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틸탭(till-tap) 영장은 경찰관이 사업장에서 틸(금전등록기)에 들어 있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지시합니다.

일반적으로 키퍼(keeper) 영장은 경찰관이 사업장에 하루종일 대리인을 두고 영업 수익을 징수하도록 지시합니다. 단, 키퍼 영장은 최대 10일간 요청할 수 있습니다.

CDTFA는 일반적으로 구두 및 서면 요청, 기타 추심 방법이 실패한 경우에만 틸탭 영장 또는 키퍼 영장 중 한 가지 방식을 사용합니다.

법률에 따라 CDTFA는 법 집행기관이 평가한 영장의 비용을 사업주로부터 추심할 수 있습니다.

CDTFA는 판매자 허가증을 취소(중지)할 수 있습니다.

CDTFA는 적시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판매세 또는 사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판매자 허가증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CDTFA는 기관에서 보증금을 요구했으나 보증금을 전송하지 않은 경우에도 허가증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CDTFA는 다른 모든 구제책이 모두 사용되지 않는 한 허가증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심의회 알림

납세자 권리장전에 따르면 허가증이 취소(정지)되기 60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심의회 일정이 잡히면 심의회 날짜는 1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귀하는 10일 이내에 허가증을 정지하지 말아야 할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응답하지 않으면 허가증은 정지됩니다. 통지서에 응답할 경우, 심의회에서 귀하의 주장이 평가됩니다.

허가증이 정지된 후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경우 경범죄에 해당하며 판매 1건마다

법을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위반 1회 시 법원의 재량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및/또는 최대 \$5,000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허가증을 복권하려면 연체된 모든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사업장 한곳당 \$100의 복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허가증이 정지되고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CDTFA는 최후의 수단으로 형사 기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류 판매 허가증이 정지되거나 허가증의 양도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입 및 조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 또는 과태료 납부 기한이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또는 어떤 이유로든 납세자의 채권이 무효화되거나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주류 판매 허가증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CDTFA는 세금 납부 기한이 지난 경우 **주류 규제 관리국(ABC: Alcoholic Beverage Control)**에서 특정 주류 판매 허가증의 양도를 보류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CDTFA는 DMV 딜러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차량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귀하가 **차량관리국(DMV)**에서 발급한 딜러 면허를 소지한 경우 CDTFA는 판매자 허가증이 30일 이상 취소(정지) 상태로 유지될 때 해당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CDTFA는 귀하의 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미납 금액이 십만 달러달러 (\$100,000)를 초과하는 경우, CDTFA는 *Top 500 Sales and Use Tax Delinquencies (판매세 및 사용세 연체액 상위 500인)* 명단에 귀하의 이름을 게시하여 미납 금액을 공공 기록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단, 귀하의 정보를 공개하기 30일 전 서면 통지서(수신 확인 반환이 포함된 공인 서신)를 발송하여 CDTFA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처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름이 판매세 및 사용세 연체액 상위 500인 명단에 게시된 경우, 주정부 기관과 상품 및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전문업 및 직업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이름이 *판매세 및 사용세 연체액 상위 500인* 명단에 게시된 경우 전문업 또는 직업 면허증(운전면허증 포함), 등록증, 허가증을 발급하는 주정부 면허 발급 기관은 법률에 따라 면허 발급을 취소, 정지 또는 거부해야 합니다.

CDTFA가 웹사이트에 귀하의 정보를 게시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전문업 및 직업 면허를 잃지 않으려면 다음 중 조치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합니다.

- 미납액을 전액 납부합니다.
- 승인된 분할 납부 계약을 체결하고 예정된 납부액을 적시에 납부합니다 (분할 납부 관련 정보 참조).
- 소지한 면허가 정지될 예정인 경우, 해제 요청 양식(면허 정지 조치를 발의한 주정부 기관에서 제공)에 귀하의 면허를 정지하지 말아야 할 사유를 작성하여 CDTFA로 제출해야 합니다.

CDTFA는 주정부 환급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세무국(FTB: Franchise Tax Board)은 **기관 간 압류 추심 프로그램** 및 **주정부 회계감사관실(State Controller's Office)**을 관리합니다. FTB는 미납 세금의 상계 또는 차감을 위해, 귀하에게 지불해야 할 환급금을 CDTFA로 전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DTFA는 *사전 압류 통지서를 전송해야 합니다*. 사전 압류 통지서에는 *즉시 결제 요구 통지서(Demand for Immediate Payment)*가 동봉되어 있으며, CDTFA가 상계를 위해 FTB에 귀하의 계정을 제출하기 30일 전에 통지를 받습니다.

통지서의 금액과 관련한 질문이 있거나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즉시 결제 요구 통지서*에 명시된 CDTFA 사무소로 통지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락해 주십시오. CDTFA 직원은 계정을 검토하여 귀하와 해당 내용을 논의할 것입니다.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하거나 미납 금액의 기한이 아직 경과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CDTFA에 제출해야 합니다.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CDTFA는 귀하의 계정을 FTB로 전달하여 압류 추심을 진행합니다.

CDTFA는 추심 비용 회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미납 금액에 대한 추심 비용 회수 수수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해당 수수료는 CDTFA가 징수하는 대부분의 세금 및 수수료에 적용되며, 주정부에서 연체액 추심 시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250를 초과하는 청구서가 90일 이상 미납 상태인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 금액은



연체 액수에 따라 다릅니다.

환급

납부해야 할 금액의 세금 또는 수수료 부분을 납부한 후, 해당 금액이 과다 청구되었거나 납부해야 할 금액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귀하는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급 요청이 처리될 때까지 모든 과태료 및 이자에 대한 추심 조치가 중단됩니다.

제출 기한

환급 청구 기한은 다음 날짜 중 가장 늦은 날짜로 결정됩니다.

- 청구된 과다 납부가 발생한 기간의 환급 만기일로부터 3년.
- 과다 납부 청구일로부터 6개월.
- 납부액 만기일로 지급해야 할 날로부터 6개월.
- 압류 또는 유치권과 같은 집행 절차를 사용하여 비자발적 납부액을 징수한 날로부터 3년 (유치권 해제를 위한 납부는 자발적 납부로 간주되므로 6개월 규정에 따릅니다).

반드시 해당 기한까지 환급 청구서를 제출하십시오. 청구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세금을 과다 납부했다라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납부해야 할 세금 또는 수수료 금액을 2회 이상 납부한 경우, 환급 청구서를 적시에 1회 제출하여 해당 청구서에 적용되는 미래의 모든 납부액 및 해당하는 소멸시효 이내에 남은 이전 납부액을 총당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 2건 이상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각 개별 청구서의 환급 청구서를 적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2017년 1월 1일 이전의 납세자 또는 수수료 납부자는 일반적으로 소멸시효 만료를 방지하기 위해 각 분할 납부금에 대해 별도의 환급 청구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추가 정보

간행물 17 *이의제기 절차: 판매세 및 사용세, 특별세(Sales and Use Taxes and Special Taxes)* 및 **간행물 117** *환급 청구서 제출(Filing a Claim for Refund)*은 환급 청구와 관련한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간행물 17은 환급 청구에 적용될 수 있는 CDTFA 합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도 제공합니다. CDTFA는 이 프로그램에 따라 사건의 사실 관계를 검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납세자의 납부 금액의 일부를 환급하여 분쟁 청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청구서 관련 질문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하기 전 청구서에 명시된 전화번호로 먼저 문의하십시오.

CDTFA 사무소

도시	지역 코드	번호
Bakersfield	1-661	395-2880
Cerritos	1-562	356-1102
Culver City	1-310	342-1000
El Centro	1-760	352-3431
Fairfield	1-707	427-4800
Fresno	1-559	440-5330
Glendale	1-818	543-4900
Irvine	1-949	440-3473
Oakland	1-510	622-4100
Rancho Mirage	1-760	770-4828
Redding	1-530	224-4729
Riverside	1-951	680-6400
Sacramento	1-916	227-6700
Salinas	1-831	754-4500
San Diego	1-858	385-4700
San Francisco	1-415	356-6600
San Jose	1-408	277-1231
Santa Clarita	1-661	222-6000
Santa Rosa	1-707	576-2100
Ventura	1-805	677-2700
West Covina	1-626	480-7200

타주 계정

1-916-227-6600번으로 전화하십시오

특별세 및 수수료국

1-800-400-7115
(*Special Taxes and Fees*(특별세 및 수수료) 선택)

웹사이트

www.cdtfa.ca.gov

웹사이트에서 다양한 간행물과 양식을 보고 인쇄하거나, 세율 또는 합의 프로그램 관련 정보, 기타 중요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 센터

1-800-400-7115(CRS:711)

세금 또는 수수료와 관련한 일반적 질문이 있을 경우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주 지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00~오후 5:00(태평양 표준시) 사이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양식 및 간행물

CDTFA 웹사이트(www.cdtfa.ca.gov)의 양식 및 간행물을 보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일부 양식 및 간행물은 고객 서비스 센터 (1-800-400-7115, CRS:711)에 전화하여 우편으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납세자 권리 보호 사무소

관리자와 논의 등 일반 채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 권리 보호 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납세자 권리 보호 사무소(Taxpayers' Rights Advocate), MIC:70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70
1-888-324-2798 수신자 부담 전화
1-916-324-2798 전화
1-916-323-3319 팩스

본 간행물은 표지에 명시된 간행물 작성 시점의 법률 및 관련 규정을 요약하여 제시합니다. 그러나 해당 시점 이후 법률 또는 규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간행물의 내용과 법률이 상충하는 경우 법률이 우선합니다.